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5. 31 선고 2023가단11127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

피 고 B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
담당변호사 지현우
변 론 종 결 2024. 4. 26.
판 결 선 고 2024. 5. 31.

주 문

-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10 지분에 관하여 2019. 4. 9. 체결된 증여계약은 10,012,09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,012,0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10 지분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9. 4. 9. 체결된 증여계약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은 사해행위로서 C의 책임재산 90,217,800원 중 잔여 책임재산인 10,012,09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,012,0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이 사건 소는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과 중첩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,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도 없으며,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.

2. 판단

먼저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.

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,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,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5, 7 내지 9호증, 을 제4, 5,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20. 2. 3.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(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04467호,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단105492호), 위 소송의 피고 대리인이자 피고 아버지인 D이 2020. 9. 2.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,000,000원을 입금한 후 1)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날 위 소송을 취하하여 2020. 9. 22. 위 소송이 소취하로 종국 되었는바,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한 20,000,000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가액반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, ② 주식회사 E은 2021. 7. 30.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3. 11. 1.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(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24682호, 같은 법원 2022나31367호), 피고는 2023. 11. 27. 위 확정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E에 80,205,708원을 지급하였는바, 위 80,205,708원도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가액반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것인 점, ③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의 책임재산은 위 각 돈의 합계에 못 미치는 90,217,8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한 가액의 회복을 모두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.

3. 결론

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.

판사 유석동

부동산 목록

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대 269㎡ 끝.

1) 피고는 19,800,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,000,000원을 입금한 것이 확인된다.